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

(민병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77
----------	------

발의연월일 : 2016. 7. 22.

발의자 : 민병두 · 윤호중 · 정성호
이찬열 · 소병훈 · 전혜숙
서영교 · 고용진 · 우원식
박용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교통법」에서 운전 중 자동차의 화물낙하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낙화물 발생건수는 고속도로에서만 연간 20만건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러한 낙화물은 다수의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음.

이에 따라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12호 신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처벌의 특례) ① (생 략)</p> <p>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p>	<p>제3조(처벌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p> <p>-----</p> <p>-----</p> <p>-----</p> <p>-----.</p> <p>-----</p>

<p>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 11. (생략)</p> <p><u><신설></u></p>	<p>----- ----- ----- -----.</p> <p>1. ~ 11. (현행과 같음)</p> <p><u>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 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u></p>
--	--